

2006. 7.

# 其他案件審查報告書

- 충주기업도시개발사업 개발전담회사 설립  
출자 승인안
- 2006년도 공(시)유재산관리계획변경(6차)안

總務委員會

# 기타안건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조례안	제안일자	회부일자	상정일자	의결일자	제안설명
충주기업도시개발사업 개발전담회사 설립 출자 승인안	2006.7.5	2006.7.7	2006.7.13	2006.7.13	투자유치 지원실장
2006년도 공(시)유재산 관리계획 변경(6차)안	2006.7.5	2006.7.7	2006.7.13	2006.7.13	총무과장

## 2. 제안설명요지

### 가. 충주기업도시개발사업 개발전담회사 설립 출자 승인안

#### 1) 제안이유

-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하여 선정된 기업도시 시범사업 추진을 담당하게 될 민간기업법인(특수목적법인)에 충주시가 출자를 통하여 기업도시 개발사업 시행자로 참여하고자 함

#### 2) 주요내용

- 특수목적법인의 자본금 구성 : 800억 원(총사업비 4,000억 원의 20%)
  - SPC 참여기업 출자 400억 원(10%)
  - 금융기관 대출확약 400억 원(10%)
- 충주시의 출자계획
  - 자본금 구성비 5%(20억 원) 현금출자

## 나. 2006년 공(시)유재산 관리계획변경(6차)안

### 1) 제안이유

- 2006년도 공(시)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 의회의 의견을 받고자 함

### 2) 주요내용

#### 1. 충주 거점산지유통센터(APC) 건립

##### ○ 사업개요

- 위 치 : 충주시 금가면 사암리 산28-1 일원(14,422평)
- 사 업 비 : 17,720백만원(국 8,860, 도 4,430, 시 4,430)
- 기 간 : 2006년 ~ 2007년
- 규 모
  - 건 축 : 3,360평
  - 기계장비 : 14종 18대

##### ○ 사업목적 및 필요성

- 대규모 · 고품질의 선별, 저장기능을 갖춘 산지유통센터를 설립함으로써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고자 함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### 가. 충주기업도시개발사업 개발전담회사 설립 출자 승인안

-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민간기업 스스로 자족적인 도시를 건설, 지역에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국가 주요 시책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중대한 현안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.

- 본 안건은 충주기업도시 개발을 담당할 특수목적법인(SPC)을 설립함에 있어 우리 시가 현금출자를 통하여 동 법인에 일정 지분을 투자함으로써 동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출자의결 주문과 관련 주요 사안별 검토내용입니다.
- 첫째, 현행 법령상 자치단체가 특수목적법인에 출자가 가능 한가?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

- 「기업도시개발특별법」 제4조에 민간기업과 협의된 경우 지방자치 단체도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을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

**제4조(개발구역 지정의 제안)** ①제10조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민간기업 및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(민간기업과 협의된 경우에 한한다)는 관할 광역시장·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.

- 동법 제10조 제②항에 의하면 ‘건교부장관은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민간기업 등을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거나 민간 지정하거나 민간기업과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’고 규정하고 있고
- 같은 조 제⑤항에 자치단체의 참여지분 비율에 대하여 규정한 점을 볼 때 금번 시에 출자하려는 특수목적법인(SPC)을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①항의 규정에 의한 “자치단체의 출자가능 단체”로 볼 수 있어 우리 시가 공동시행자 자격으로 출자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
- 참고로 전남 무주시도 본 규정을 근거로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특수 목적법인에 출자한 바 있습니다.

#### [기업도시개발특별법]

**제10조(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)**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민간기업 또는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업과 협의하여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고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.

**⑤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개발사업 자본의 지분비율의 합은 민간기업의 지분비율의 합을 초과할 수 없다.**

#### [지방재정법]

**제18조(출자의 제한)**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「지방공기업법」에 의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외의 단체에 대하여는 출자를 할 수 없다.

- 또한, 지난 2006년 5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시비 투자를 포함한 기업 도시 사업계획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.

## ○ 둘째, 민간법인 출자를 위한 사전절차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.

- 민간법인 출자에 대한 절차적 규정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②항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출자가 가능도록 규정하고 있어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### [지방재정법]

제18조(출자의 제한) ②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## ○ 셋째, 출자에 따른 시의 지위와 책임 한계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.

- 자본금의 출자는 「기업도시개발특별법」 제10조 ④항에 ‘기업도시 조성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의 20%를 조성하도록’ 규정되어 있어
- 우리 시는 총사업비 4,000억원의 20%인 800억원 중 금융기관 대출확약 분 400억원을 제외한 순수 SPC(특수목적법인) 참여기업에서 출자한 400억원에 대한 5% 비율인 20억원을 출자하려는 것으로
- 시가 SPC에 출자함으로써 본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구상단계에서부터 분양에 이르기까지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전반에 관여할 수 있게 됩니다.

제10조(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)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그 지정 전에 토지매입비 및 부지 조성 공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조성비의 20퍼센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자기자본 및 투자자금(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금융기관이 대출확약을 한 자금을 포함한다)을 확보하여야 한다

- 이에 따라 우리 시는 공동시행자로서의 지위와 함께 본 사업을 관리, 감독하는 관리자(청)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게 된은 물론, 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추가 출자나 사업비 확보 등 재정적 부담과 함께 기업도시 조성 후 토지분양 등을 통한 수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다만, 본 개발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총 4,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사업비가 요구되고 당장 출자금으로 20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시비가 투자됨은 물론, 향후 사업여건에 따라 추가 출자도 예상할 수 있어 심도 있는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.

#### 나. 2006년 공(시)유재산 관리계획변경(6차)안

-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은 농림부의 FTA기금 과수산업 육성계획에 따라 과수 주산지에 현대화 된 선별·저장·포장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균일품질의 과일상품을 유통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과수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하는 사업입니다.
- 사과, 복숭아, 배 등 과수농가가 많은 우리 시의 경우 타 시군 및 외국산 농산물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 판단됩니다.
- 거점산지유통센터는 국고 50%, 지방비 50%씩을 각각 부담하여 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공유형과 국고 30%, 지방비 20%, 자부담 50%로 설립하는 일반유형으로 구분되어 지원되는데
- 우리 시의 경우는 공공유형의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며 건립된 거점산지유통센터는 충주시가 소유하되 운영은 충북원예농업협동조합이 담당하게 됩니다.
- 이때에 사용·수익허가와 관련하여 수의계약으로 충북원예농협협동조합을 운영자로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0조(사용·수익허가)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그러나, 본 사업은 177여억 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으로 치밀한 계획과 분석으로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건립은 물론, 건립이후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심도 있게 검토, 추진하여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
- 동 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부지가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야만 건축이 가능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위치하여 있으므로 사업 시행 전에 건축가능 여부를 명확히 한 후에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.

## 4. 질의. 답변 요지

### 가. 충주기업도시개발사업 개발전담회사 설립 출자 승인안

▶질의 : 5% 지분 결정 사유는?

○답변 : 특별히 정하여지진 것은 없으나 5%정도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 타시군의 경우에도 5% 범위내에서 지분 참여를 했거나 하려고 준비 중임

▶질의 : 추가 출자 여부는?

○답변 : 설계 금액에 따라 있을 수 있음

### 나. 2006년 공(시)유재산 관리계획변경(6차)안

▶질의 : “없 음”

## 5. 심사 결과

가. 충주기업도시개발사업 개발전담회사 설립 출자 승인안 : 원안가결

나. 2006년 공(시)유재산 관리계획변경(6차)안 : 원안가결

## 6. 붙임

가. 충주기업도시개발사업 개발전담회사 설립 출자 승인안 1부

나. 2006년 공(시)유재산 관리계획변경(6차)안 1부 끝.